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16일, 이창열 의원 발의

○ 회부일자: 2026년 10월 8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10월 13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봉안시설로의 이장을 허용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군 봉안시설로 이장하여 이용할 때, 이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. (안 제10조제8호)

- (기존) 자연장지 또는 가족봉안묘 이용
- (개정) 제한 없음(봉안담, 봉안당, 가족봉안묘, 자연장지 이용 가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관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군 봉안시설로 이장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, 불명확한 요건과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,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 자격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제8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, 관외 봉안시설 유골 이장 시 이용시설을 자연장지와 가족봉안묘로 한정했던 기존 단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봉안담과 봉안당 등을 포함하여 군민의 장사시설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.

❍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장사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